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약관

제정일 2026 년 03 월 23 일

제 1 조(약관의 목적 등) ① 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이하 “국내시장복귀계좌”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및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 등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국내시장복귀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납입한도가 5 천만원 이내일 것(「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26 제 3 항제 2 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② “국외상장주식”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26 제 1 항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한다.

제 3 조(계좌개설 및 한도) ① 고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5 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한도를 설정하여 회사에 국내시장복귀계좌 개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각 금융회사 등 별로 하나의 국내시장복귀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등에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개설하더라도, 모든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은 총 5 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 조(국외상장주식의 입고 및 매도) ① 고객은 본인이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을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개설한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할 수 있으며, 입고 가능한 주식의 범위, 수량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별첨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고객은 제 1 항에 따라 입고된 국외상장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 한도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첨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고객이 제 2 항에 따라 국외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별첨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매도대금을 자동환전 처리할 수 있다.

④ 고객은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한 국외상장주식에 대하여 매도 의사가 없거나, 매도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일반계좌로 출고할 수 있다.

제 5 조(국내시장복귀계좌 내 투자) ①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금은 제 4 조에 따라 매도한
국외상장주식의 매도대금으로 한정하며, 고객은 국내시장복귀계좌에 현금 등을 추가로 납입(입금 및
이체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 고객은 제 1 항의 매도대금을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상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③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된 국외상장주식에서 배당(현금 및 주식)등의 지급 사유 발생시 회사는
해당종목의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국내시장복귀계좌로 국외상장주식을 입고하기 위해 출고한 계좌에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배당(현금 및 주식)을 지급하여 처리하며, 본 약관의 동의로 국내시장복귀
계좌의 배당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 6 조(인출) 고객이 제 7 조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국내시장복귀계좌 내 국외상장주식
매도대금을 그 납입일(국외상장주식 매도대금이 원화로 환전 되어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금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 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복귀계좌의
원화자산 잔고가 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7 조(과세특례) ① 고객은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제 2 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고객이 2025 년 12 월 23 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할 것
2. 제 1 호에 따라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일부터
1 년 이내에 인출(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 1 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 1 호의 금액에
제 2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고객이 국외상장주식을 2026 년 1 월 1 일부터 2026 년 5 월 31 일까지의 기간에
양도(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

나. 고객이 국외상장주식을 2026 년 6 월 1 일부터 2026 년 7 월 31 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80%

다. 고객이 국외상장주식을 2026 년 8 월 1 일부터 2026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50%

2. 고객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양도(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는 제외한다)한 국외상장주식 및 국외상장주식 대체자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 가목으로 계산한 조정비율

가. 조정 비율 = $1 - (\text{국외상장주식 및 국외상장주식 대체자산 순매수금액} \div \text{RIA 내 국외상장주식 매도금액})$

나. 국외상장주식 및 국외상장주식 대체자산 순매수금액은 RIA 외 모든 계좌에서의 국외상장주식 및 국외상장주식 대체자산의 매수·매도금액을 기간별 차등화된 가중치로 합산하여 계산 (2026년 1월 1일 ~ 5월 31일까지 100%, 2026년 6월 1일 ~ 7월 31일까지 80%, 2026년 8월 1일 ~ 12월 31일까지 50%)

다. 국외상장주식은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DR, ETF 및 ETN 등이며, 국외상장주식 대체자산은 국내상장 해외ETF 및 ETN과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를 뜻함 (설립·설정이 1개월 경과)

③ 그 밖에 공제금액 산출방식, 공제순서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세제 관련 법령(이하 ‘세제관련법규’라 한다)에 따른다.

제 8 조(과세특례 제한) 제 7 조에 따라 공제를 적용 받은 고객이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세제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자료의 정보제공)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고객별 국내시장복귀계좌 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한도를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한도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 10 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증거금율 및 신용공여 여부 등의 제한사항은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1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거래소 규정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전자우편, SMS 등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관계법규 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세제관련법규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13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4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5 조(관계법규 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첨 1〉

1. 제 4 조 제 1 항의 “〈별첨 1〉에서 정한” 입고 가능한 주식의 범위, 수량 산정방식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고객은 회사를 통해 1 만원에서 5 천만원 이내의 범위로 납입금액 한도를 사전에 정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는 고객이 정한 납입금액 한도 범위내 공제 대상 국외상장주식의 범위 및 수량을 산정하여 관리하며 입고대상 수량 산정식은 다음 1)과 같다.
 - 1) Min(2025 년 12 월 23 일 기준 보유(결제대금 완료기준) 주식의 수량, 입고 직전 보유 중인 수량)
 - 나. 회사는 고객이 국내주식복귀계좌에 입고하기전 2025 년 12 월 23 일까지 보유한 국외상장주식 수량에 한정하여 공제대상 수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다. 국외상장주식의 입고 후 매도 시 매도결제대금(원화환전금액)을 기준으로 납입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매도수량을 공제대상 수량으로 관리한다.
 - 라. 12 월 23 일기준 해외주식 소수점 주식으로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의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로 입고할 수 없다.
 - 마.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하였으나 매도의사가 없어진 경우 출고할 수 있다.
 - 바. 입고 시 누적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입고가 제한되며, 2025 년 12 월 23 일 잔고수량을 보유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입고가 제한된다.
 - 사. 입고가능 상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국내시장복귀계좌 관련 규정을 따른다. 다만, 회사는 관련 제반 준비 완료시까지 입고가능 상품의 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2. 국내시장복귀계좌 내 투자대상 범위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한다.
 - 나. 국내상장주식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리츠는 포함하되 DR 은 제외한다
 - 다. 국내주식형펀드는 설정·설립 1 개월이 경과한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80% 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이 편입되지 않아야 한다.
 - 라.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 마. 회사는 고객이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한 국외상장주식으로 지급권리(현금배당, 주식배당 등) 등이 발생한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로 입고하였던 이전 출고계좌에서 해당 권리를 처리한다
 - 바. 인출가능 여부는 매도결제일(원화환전일)을 기준으로 납입일 단위로 판단한다.
 - 사. 고객은 국내복귀계좌 내 자산 잔고가 납입누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인출은 허용한다.
 - 아. 투자가능상품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국내시장복귀계좌 관련 규정을 따른다. 다만, 회사는 관련 제반 준비 완료시까지 매수가능 상품의 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자. 소득공제금액은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순으로 산출한다.

〈별첨 2〉

1. 제 4 조 제 2 항의 “〈별첨 2〉에서 정한” 매도 한도 등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가능 수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상장주식의 매도 시 납입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수량의 매도주문은 제한되므로 “신규 매도주문 한도금액” 범위 내 매도하여야 한다.

2) 신규 매도주문 한도금액은 국내복귀계좌의 설정된 납입한도에서 누적납입금을 제외 후 아직 결제되지 않은 미결제 체결수량의 기준가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규매도한도 = RIA 납입한도 - 누적납입금 - 미결제 매도체결 수량이 매도 시 기준가격*)

* 매도 시 기준가격

: 매도주문시점의 전일종가(현지시간) * 주문수량 * 전일기준환율**(한국시간)

** 전일기준환율

: 매도주문시점 가장 최근 고시된 외국환거래법상 매매기준환율로 주문시점 당일기준환율이 고시된 경우 당일기준환율을 이용함.

3) 잔여한도 초과로 매도하지 못한 국외상장주식은 출고할 수 있다.

2. 제 4 조 제 3 항의 “〈별첨 2〉에서 정한” 국외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대금의 자동환전은 다음과 같다.

가. 회사는 국외상장주식의 매도결제일에 외화매도결제금액을 원화(KRW)로 자동 환전 처리한다.

나. 매도결제금액의 자동 환전 처리시 해당 시점의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 국내시장복귀계좌의 경우 통합증거금이 적용되며, 국외상장주식의 매도로 외화결제예정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결제일 전 환전처리 없이 국내주식 등 상품의 매수 거래가 가능하다.

라. 자동환전 기준 등은 회사의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설명서 기준’에 따른다.

마. 자동환전 이외의 일반 환전업무의 처리는 제한된다.

바. 본 약관 동의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환전계약 체결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3. 제 10 조 제 3 항의 “〈별첨 2〉에서 정한” 증거금율 및 신용공여 여부 등의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매수, 담보대출, 대주, 대여 등의 신용공여가 제한된다.

나. 국내상품 매수증거금율은 100%로 제한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상품이 아닌 경우 등 일부상품의 거래가 제한되며, 회사는 관련 제반 서비스의 가입 및 약정등록 신청 등 일부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4. 국내복귀계좌의 중도해지 및 계좌폐쇄 등의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납입원금의 출금·고는 중도해지 후 가능하다.

- 나. 중도해지시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가 있는 경우 결제 완료 후 해지할 수 있다.
- 다. 중도해지시 전액해지로 간주되어 전체 세제혜택을 취소한다.
(1년 경과된 납입원금이 있더라도 계좌기준 전체 세제혜택 취소)
- 라. 중도해지 후 중도해지의 취소는 중도해지 처리일(당일)에 한하여 가능하며, 중도해지 후 잔고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마. 중도해지의 취소 완료 시 해지 전 공제내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 바. 국내주식복귀계좌의 폐쇄는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 후 잔고 미보유시 가능하다.
- 사. 중도해지, 만기해지 등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반 종합매매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5. 위탁수수료의 징수

위탁수수료는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트레이딩가이드 > 매매수수료/예탁금이용료’에 게시

6. 코스피/코스닥 시장 유관기관 수수료는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트레이딩가이드 > 매매수수료/예탁금이용료’에 게시